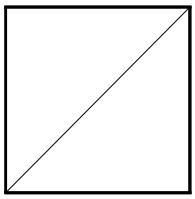
공 개



| 의안번호 | 제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6. 7. 22.<br>(제 14 차) |

의결사항

# 크로넥스㈜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권 대 영 |
|---|---|
| 제출 연월일 | 2026. 7. 22. |

## 1. 의결주문

크로넥스㈜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2026.4.9.부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크로넥스㈜(이하 “회사”)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

○ 과징금 : 크로넥스㈜[코넥스시장 상장법인] 600,000원

## 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7호,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,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3항

나. 크로넥스㈜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 : <붙임 2>

(별지)

# 크로넥스㈜에 대한 조치안

**증권선물위원회는 크로넥스㈜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7호의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600,000원을 부과한다.**

## 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크로넥스㈜

- 대표이사 : ☆☆☆, ◇◇◇(공동 대표이사)
- 사업자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-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△△△ △△△ △△△ △△△△△ △△

## □ 조치이유

○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

-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
- 회사는 2021.8.25.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부동산* 취득계약을 체결했음에도

  * 수원시 ▷▷▷ ▷▷▷▷ ▷▷▷▷-▷ ▷▷▷▷▷▷▷▷▷ ▷▷의 11개호실(양수금액은 27.84억원으로 '20년말 총자산 64.49억원의 43.17%)

- 다음날인 2021.8.26.까지 주요사항보고서(유형자산 양수결정)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19영업일 지연된 2021.9.27.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

<붙임 1>

# 관 계 법 규

## 1.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**제16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)**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

**제165조의4(합병 등의 특례)**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합병 등”이라 한다)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·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

**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**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(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.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

## 2.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171조(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)** ②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.

5. 양수·양도하려는 자산액(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)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(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·양도. 다만,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·제품·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·양도는 제외한다.

**제176조의6(영업양수・양도 등의 요건・방법 등)**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"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・양도,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, 포괄적 이전(「상법」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・양도 가액,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,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(제176조의5제9항・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)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3.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

**제25조(과징금의 부과)**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,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, 제174조,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

## [별표 제2호] '과징금 부과기준'

3.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

다. 법 제429조제3항(주요사항보고서) 위반사항

(1)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(거짓기재·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) 전후 각각 15거래일간(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.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)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.

(2)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.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4. 부과비율의 산정

가.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(1)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(2)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

| 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상향조정사유 발생 | 100분의 3 | 100분의 2.4 | 100분의 1.8 |
| 해당사항 없음 | 100분의 2.4 | 100분의 1.8 | 100분의 1.2 |
| 하향조정사유 발생 | 100분의 1.8 | 100분의 1.2 | 100분의 0.6 |

## 나.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

(2) 비계량적 위반사항

(가)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·중·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.

| 중요도 / 구분 | 상 | 중 | 하 |
|---|---|---|---|
| 주가변동률 | 200% 이상 | 50% 이상<br>200% 미만 | 50% 미만 |
| 주요경영사항 | 800% 이상 | 250% 이상<br>800% 미만 | 250% 미만 |

주1) 공시의무발생일(거짓기재·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,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) 전후 15거래일간(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,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.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.) 주가변동률[{(당해종목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 - {(동일업종 최고주가/최저주가)×100}]

주2)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(또는 비율)/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(또는 비율)×100

## 다. 감안사유 판단기준

| 구 분 | 조 정 기 준 |
|---|---|
| 상향조정사유 | ·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<br>· 공시위반행위로 조치(경고 및 주의 제외)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(생략) |
| 하향조정사유 | ·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(다만,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,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. (생략) |

## [별표 3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### 2.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

가. 동기·결과의 판단요소

【 위법행위 동기 】

(1) 고　　의 :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
(2) 중 과 실 :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
(3) 과　　실 :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

【 법규위반 결과 】

○ 증권·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, 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,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.
(1) 사회적 물의야기
(2) 중대
(3) 경미

<붙임 2>

# 크로넥스㈜에 대한 과징금 산정내역

## Ⅰ. 산정원칙

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/10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]

## Ⅱ. 산정결과

□ **총 과징금 부과금액 : 600,000원**

(단위 :원)

| 구 분 | 과징금 부과금액 |
|---|---|
|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제출의무 위반(21.8.26. 위반) | 600,000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 금융감독원 |
|---|---|---|
| 소관부서 | 공정시장과 | 공 시 심 사 국 |
| 연 락 처 | 02-2100-2688 | 02-3145-8470 |